

[2016년]

# 대규모사업장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보고

## I 점검개요

### 점검 배경 및 목적

- ◆ 우리시 주요 정책 및 기반사업 중 10억 이상의 대규모사업장 추진 실태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공사시공실태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여
- ◆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사전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유도

### II 점검개요

- 점검기간 : 2016. 11. 14. ~ 12. 15.
- 점검대상 : 총 24건(10억원이상 사업장)
- 점 검 반 : 기술감사팀 +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
  -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참여(건축, 토목 분야)
- 점검방법 : 공사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 병행 실시

### III 주요 점검내용

- 계약분야(전자 통보 이행 등)
- 안전, 품질, 환경관리 분야(계획서 수립 및 점검 등)
- 준공된 사업장의 정산관련
- 건설폐기물 올바른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 적정 여부 등

연번	점검대상사업	해당실과	진행	비고
1	탕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	안전총괄담당관	준공	
2	중앙도서관 건립사업	공공시설과	공사 중	현장점검
3	맹씨행단 기념전시관 건립	문화관광과	"	"
4	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 및 종합스포츠클럽센터 건립공사(건축, 전기, 통신, 소방)	전국체전준비단	준공	
5	주경기장(이순시종합운동장) 보수보강 공사(건축, 기계, 토목)	"	"	
6	강변테니스장 정비공사	"	"	
7	아산실내수영장 정비공사	"	"	
8	아산제2테크노 진입도로 개설공사	기업경제과	공사 중	현장점검
9	은행나무길 농촌테마 가로공원 조성사업	산림복지과	"	
10	산골소하천 정비사업	건설과	"	
11	송악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	"	준공예정	
12	송악전통예절문화센터 신축	"	준공	
13	수철2소하천 정비공사	"	공사 중	현장점검
14	곡교천(옥정보)주변 생태습지 조성사업	"	"	
15	온천대로(풍기동~남동)6차로 확포장공사	도로과	"	
16	아산초등학교 진입도로 및 육교설치공사	"	"	
17	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	개발정책과	"	
18	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공사	신도시지원과	"	
19	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동서축 도로개설공사	"	"	
20	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(BTO)	하수도과	"	
21	송악 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	"	"	현장점검
22	매곡천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	"	"	
23	원도심하수관거 정비공사	"	"	
24	도고선장하수관거정비사업	"	준공	

## 1. 총 평

- '16. 3. 21. ~ 4. 1.(10일간) 총공사비 1억원이상(관급포함)인 건설공사 (대상기간 : '12. 3. ~ '16. 2.)에 대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종합감사를 실시 한 바 있어 올해 공사 착공한 사업장을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
- 우리시에서 발주한 10억원이상의 대규모사업장 24개소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'16. 4.~ 10.까지 새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배출인계서 작성의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(한국환경공단 자료) 공사감독자가 직접입력 한 것으로 파악되며, 처리업체의 대행입력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사료됨
-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안전화 등을 구입한 후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시 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정산하거나,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유도자(인건비)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대상이 아닌데도 정산한 경우가 있어 향후 정산 시 증빙자료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또한, 지급대장 작성 시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함
- 준공 시 사후정산 관련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하고, 전자세금계산서 금액과 구입한 항목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- 공사 발주 시 시방서나 과업지시서에 경비의 세비목을 기재하고 한전 불입금 등은 수수료로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도급금액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
-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임에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중간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독업무에 소홀한 사항이 있었으며, 사업추진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도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현장 여건에 따라 건축, 토목분야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시공 상태 및 안전관리 등 내실 있는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음



아산 중앙도서관 건립사업



아산 제2테크노진입도로 개설공사

## 2. 점검결과

### ▣ 행정상 조치

(단위 : 건)

지 적 사 항					제도개선	수범사례
계	시정	주의	개선	현지조치		
6	6	-	-	-	-	-

### ▣ 재정상 조치

(단위 : 건 / 천원)

계	회 수	감 액	재시공	비 고
4/12,919.15	4/12,919.15	-	-	-

### ▣ 신분상 조치

(단위 : 명)

계	증징계	경징계	훈 계	주 의
-	-	-	-	-



## ■ 공사현장관리 및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소홀

- 공사명 : 아산 ★★★★★★★★ 개설공사
- 지적내용
  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가 포함되어 있음
  -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12조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·점검(근태사항 등)을 하여야 하며,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36조제1항 및 동 지침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
  - 또한, 동 지침 제8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
  - 그러함에도 “아산 ★★★★★★★★ 개설공사”사업장은 2개 교량(◇◇교, ◇◇교)의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는 있으나 ◇◇교의 일부구간의 균열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, 월별 중간보고서 제출 시 콘크리트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았고, 또한 일부 구간에서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
  - 또한,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행계획서에 개정된 규정(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)이 아닌 종전 규정(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)을 적용하여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있음

## 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소홀

- 공사명 : ★★★★★★★★ 신축공사
- 지적내용
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,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37호, 2014. 10. 22.)제3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계상하여야 하며, 제7조에 따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, 제8조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
- 그러함에도, “★★★★★★ 신축공사” 사업장에서는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유도자(신호자)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에도 정산한 사실이 있음

○ 공사명 : ★★★★★★ 정비공사

○ 지적내용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, 「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37호, 2014.10.22.)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제8조 규정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을 요구하여야 함
- 그러함에도, “★★★★★★ 정비공사”를 마무리하면서 도급자인 △△종합건설(주)(△△△)이 제출한 공사 정산내역서 중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[별표2] 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신호수, 안전간판, 칼라콘 및 칼라콘 걸이대에 대하여도 정상 집행한 것으로 정산함에 따라 1,124,600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

## ■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

○ 공사명 : ★★★★★★ 정비공사

○ 지적내용

- 건축법 제20조(가설건축물)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음
- 그러함에도, “★★★★★★ 정비공사” 사업장에서는 도급업체인 (주)△△건설에서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서 현재까지 미신고한 상태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

## ■ 정산업무 소홀

- 공사명 : ★★★★★★★ 시설확충 및 ★★★★★★★ 건립 전기공사
- 지적내용
  -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, 2014.8.5시행) 제2장제5절제3관제3호 공사원가의 체계에도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을 구성되어 있음
  - 「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」(국토교통부 고시 2014-304, 2014.5.23) 제100조 제10항에 “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·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음
  - 그러함에도 “★★★★★★ 시설확충 및 ★★★★★★★ 건립공사”를 추진하면서 당초 발주설계도서의 공사원가계산서(전기공사)에 한전 불입금 및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발주 부서인 ○○○○○○○에서 집행(내부결의)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2015.8.28. 설계변경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분담금공사라는 비목을 신설하여 일부금액(8,771,650원)을 도급금액에 포함시킴
  - 또한, 한전 납부 공사비와 자가용 사용전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수수료(분담금공사)를 건축부분 도급자인 △△종합건설(주)에서 납부한 자료(전자세금계산서)를 첨부하여 정산하였는데도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준공내역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「준공검사 결과보고(전기공사, 2016.5.20.)」 하였고, ○○○○○○○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분담금 공사비 8,771,650원을 부적정 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음

## ▣ 관련업무 소홀

○ 공사명 : ★★★★★★★ 시설확충 및 ★★★★★★★ 건립

○ 지적내용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, 「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37호, 2014.10.22)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2의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제8조 규정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, 그 비용의 사용계획서를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
- 또한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제3항에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
- 「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」(국토교통부 고시 2014-304, 2014.5.23) 제6조제2항 제5호에 “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”로, 제100조 제10항에는 “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·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음
- 그러함에도 “★★★★★★★ 시설확충 및 ★★★★★★★ 건립”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불가내역에 해당하는 공사안내표지판 2개, 금지·주의표지판 24개, 안내표지판 7개를 정산하였으며, 하천수 사용허가기간 이전에 살수차를 사용(6회)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였음(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로 2,044,900원 과다 집행)

- 가설전기 사용요금과 관련하여서도 가설전기(임시수전설비)에 대하여는 2015.2월부터 도급자인 △△종합건설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오다가, → 공사준공예정일(2016.5.31)이 임박한 시점인 2016.5.23. 에서야 전기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책임건설사업관리자에게 “실정보고(공통공사 중 가설전기사용료 정산)”를 하였음
- 또한,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(2차)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정기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, 도급자인 △△종합건설에서 임의로 안전점검업체인 △△안전연구소(주)(▲▲▲)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및 최종보고 함
- 도급자인 △△종합건설에서는 1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책임건설사업관리자에게 “공통공사(안전점검비용) 실정보고”(2016.3.24.)를 하였으며,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◇◇◇◇◇◇◇◇에게 2016.3.31.에 승인요청을 하는 등 책임건설사업관리자와 도급자가 제반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

## VI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의견 및 기타 지적사항

연번	해당 실과	사업명	지적내용	비고
1	○○○○과	●●●●● 건립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기성 및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과 관련한 증빙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함</li> <li>▪공사장 주위 낙하방지용 난간 및 외부 담장주위의 법면구간의 처리가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낙하방지용 난간의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점검을 권고함</li> <li>▪가설난간 점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비치 권고함</li> </ul>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적재 상태가 일부 무질서 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재 반입 및 반출 시 정리 정돈을 요함</li> </ul>	권고조치
2	○○과	●●●●●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향후 배수설비 공사 시행 시 재원의 혼동이 없도록 정화조 폐쇄 비용에 대한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

3	○○○○○과	아산 ●●●●●● ●●●●●● 개설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◇◇교 뒷면부의 경우 수직균열이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일부 발생과 그 부위에 백화(백태)현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제거하지 않아 녹이 발생한 일부 노출천선, 폼타이 볼트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</li> <li>▪2개 교량(◇◇교, ◇◇◇교)에 대한 균열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</li> <li>▪2개 교량 벽체 일부구간의 재료분리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</li> <li>▪2개 교량 벽체와 흥벽(파라펫)사이의 콘크리트면 상태가 불량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</li> </ul>	시정
4	○○○○○과	●●●●● 기념전시관 건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안전화, 안전모 등 지급대장을 확인하여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증빙자료 검토 철저</li> </ul>	권고조치